의안번호	제 15 호		
의 결	2014년	월	일
연월일	(제	회)	

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		
제출연월일	2014년	월	일

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15

제출연월일 : 2014. 9. 3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나. 의견수렴 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라.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)
- 마. 위원회 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신・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(2014. 8. 1. ~ 8. 21.):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재정법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주민"이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주민의 의견제출)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·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 는 아니 된다.
- 제4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)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 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의견수렴 방법)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,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7조(의견 제출 절차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

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과 공개)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)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 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
- 2.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
- 3.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
- 4.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
- 5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 - 1.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
 - 2.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
 - 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4. 그 밖에 교육재정 및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,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

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분과위원회 설치 등)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5조(위촉 해제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
 - 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 - 4.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 - 5.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제16조(위원에 대한 교육)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 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·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- 제18조(수당 등)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협의회 등)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,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14.11.29.]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
-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시행일: 2014.11.29.] 제39조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[시행 2014.8.7.] [대통령령 제25532호, 2014.8.6., 타법개정]

-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 - 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 - 3. 사업공모
 -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 -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